

기안용지

공유기호 문서번호	지수 132	전경부령 4 조 9 항	전경사상
처리기간	3. 10.	시 장	결재 10.23 상하수국장
시행일자	94. 10.		
보존연한			
보조기관	상하수국장 견별 지수국장 홍진경 응지계장 Park	법무심사 법무감상관 법제계장	심사필
기안책임자	유병돈	34.10.23 경공 법제계장	
경유	군안참조	발행 공고제 646호 84.10.23	검인 10.25 상하수국장
제목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 개정안 임의예고		
	(제 1안)		
수신	니브결재		
	1.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조례제정의 주요 내용 및 취지를 미리 시민에게 알림으로서 시민의 역부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책수행의 효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별첨과 같이 개정조례안 임의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사항 : 서울특별시 하천 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안 임의예고		
	나. 예고기간 : 1994. 10.23 ~ 1994. 11. 11 (20일간)		
	다. 예고방법 : 공보관제 신보 게재외에 시청및 구구청 게시판 게시		
	첨부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 개정안 임의예고 1부. 끝.		
	(제 2안)		
수신	공보관 1334		

1205-25(2-1)A(4)
1981. 12. 18승인

정직 질서 창조

190mm x 268mm (인세용지 2급 60g/㎡)
조발량 1,500,000매 (인세)

서울특별시 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 하천검용료등 징수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서울특별시 하천검용료등 징수조례 개정안에 있어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서울특별시 자치 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규정 제 의가 다음과 같이 공고 한다.

34. 10. 26

서울특별시장

1. 가치범^경위 : 서울특별시 하천검용료등 징수조례
개정안
2. 개정의 주요 내용 및 취지
 - 가. 서울특별시 하천검용료등 징수조례의 준거가 되는
건설부의 하천검용료 등 사용료 징수조례 준칙이
개정됨에 따라 당시 조례도 이에 맞추어 개정
하려는 것임.
 - 나. 검용료등 월액 산정기준 (제 2조)
검용일수가 10일 이하는 월액의 반액을 징수한 현행
규정을 건설부 준칙에 의거 이를 검용일수가 15일
이하는 2분의 1액로 15일 초과는 1액로 개정하려는
것임.

다. 적용표등의 양면 (제 2 조)

제 10. 27 2
상하수국장

다음 각의 목적으로 한 네덜어 사업과 재해보연한 양면
규정은 있으나 양면 대상의 다른 양면율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행 규정을 근심부 준칙에 따라 양면대상
별 양면율을 규정하려는 것임.

라. 적용표등의 징수 (제 4 조)

적용표~~를~~ ^{취하는} ~~일시~~ ^한 ~~년~~ ^의 ~~현행~~ ^{규정}을 근심부 준칙에 따라
최고년도별 구분 징수 하되 처가년도분은 처가시,
그이후년도분은 해당년도 3월이내 징수토록 개정하려는
것임.

다. 증감징수의 규정의 폐지

교통의 전부 기타 사정에 의하여 2배 또는 2분의 1
범위내에서 증감징수할 수 없는 현행 규정을 폐지
(제 2 조 단서)

3. 의견제출

이 조항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4년 7월 1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16쪽지를 서위서작성)를 서울특별시 (참조 치수과장)
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구상

- 1) 예고 사항에 대한 양독본 의견 (환반 여부와 그 의견)
- 2) 주소,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4. 기 타

- * 검송료등 산정기준 등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치수과 (362-3977, - 397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